보건복지위원회
소 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북 구

(여성가족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04

제출년월일 : 2021. 11.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조례의 근거 법률인「아동복지법」일부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외 아동보호체계 개편에 따른 우리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라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심의사항 규정(안 제2조 제1호 신설)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을 15명으로 확대 및 위촉 위원에 대한 자격기준 전문화(안 제3조 개정)

○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치되는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안을 규정(안 제3조의2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및「아동복지법 시행령」(세부조문 별첨)

○ 「아동복지법」 제12조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3조의2(사례결정위원회)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사례결정위원회(이하 “사례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나. 합　　의 : 해당 없음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기간 : 2021. 9. 30. ~ 2021. 10. 20.

- 제출의견 : 별도의견 없음

2) 비용추계 등 자료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3) 신·구 조문 대비표 : 별첨

4) 부패/인권/성별/아동영향평가 결과

- 부패영양평가 결과 : 원안동의

- 아동영양평가 결과 : 원안동의

- 성별영양평가 결과 : 자체개선안 동의

- 인권영양평가 결과 : 인권침해 가능성 없음/검토의견(기타의견)

구분	검토안(기타의견)	반영 여부	미반영사유(개선안 포함)
인권 영향 평가	아동복지위원회 구성에 있어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가 가지는 아동권리에 대한 전문성이 있을텐데 개정안은 위원회구성의 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정해도 무방한지 아동권리 전문가에게 자문받기를 권유합니다.	미반영	-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를 준용하여 아동의 보호 및 퇴소조치에 대한 전문적 심의를 위해 위원의 자격기준을 전문화 함
	제3조 내용 중 '성별의 고려하여'는 표현이 모호하여 의도를 더 정확하게 드러나도록 구체성이 있는 표현이 필요함.	미반영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를 준용함

서울특별시성북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기능)”을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설치운영한다”를 “설치·운영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을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제3조제1항 중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를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은”을 “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2호부터 제5호”를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제1호부터 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2호, 제3호,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를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

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성북강북교육지원청 또는 구 관할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사례결정위원회) ① 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둔다.

② 사례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를 따른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5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4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간사 및 서기 각”을 “간사”로, “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주사가”를 “아동보호업무 담당팀장이”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작성보관”을 “작성·보관”으로 한다.

제10조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 ---------- ---------- ---------- ---------- ------- 설치・운영한다.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1. ---------- ------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신 설>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2. ~ 6. (생 략)	3. ~ 7. (현행 제2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① ---------- ----------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2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위	③ 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 위촉하는 사람

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으로 하되, 제1호부터 6호까지---.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성북강북교육지원청 및 구 관할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성북교육지원청 또는 구 관할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삭 제>
3.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삭 제>
<신 설>	2.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
<신 설>	3.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

	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 ---------- 담당했던 ----
<신 설>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 설>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생 략)	7. (현행 제5호와 같음)
<신 설>	제3조의2(사례결정위원회) ① 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둔다. ② 사례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시행

	령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를 따른다.
제4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등) ① ---------- 한 차례만 ----------. <단서 삭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회의 등) ① ~ ③ (생 략)	제5조(회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정례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삭 제>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⑥ (생 략)	④ (현행 제6항과 같음)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제7조(간사 등) ① ---------- 간사 ---------- 아동보호업무 담당팀장이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회의록 등)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록 등) ---------- ---------- ---------- -- 작성·보관-------.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0조(비밀 유지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비밀 유지의 의무) ----- ---------- -- 사람은 ----------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제2호 해당

3. 미첨부 사유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제2호에 의거,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 성 자

여성가족과장 강은주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12조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개정 2020. 12. 29.>

1.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③ 생략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8. 3. 6., 2020. 9. 29., 2021. 6. 29.>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 3. 6.>

③ 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8. 3. 6.>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시·도는 4급 이상 공무원, 시·군·구는 5급 이상 공무원이 포함되어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 6. 11., 2018. 3. 6., 2020. 9. 29., 2021. 6. 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시·도 교육청(시·군·구의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⑦ 생략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3조의2(사례결정위원회)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사례결정위원회(이하 “사례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해당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시·도 사례결정위원회: 시·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시·군·구 사례결정위원회: 시·군·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③~⑤ 생략 [전문개정 2021. 6. 29.]